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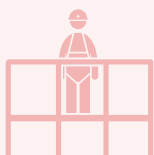
# 사다리는 통로입니다.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.

## 사다리에 의한 재해 발생 현황



- 최근 10년간(2008년~2017년) 사다리로 인하여 38,859명이 다치고,  
[ 27,739명(재해자의 71%)이 중상해 ]  
노동자 317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.
- 사다리는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입니다.

## 사다리 사고 근절을 위해서



-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
-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,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.

### 기존 작업방식 잘못된 사용 예시



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.

### 규정 작업방식 바른 사용 예시



사업주는 이동식비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지급해야 합니다.



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.



사업주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

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
Korea Franchise Association